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 확대(안 제8조)

(현행)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포함)

(개정)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대형유통기업 대표 3명,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 포함)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9조)

다.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문 신설(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하여 수행”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계획에는”을 “추진계획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성”을 “성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구미시지역에 개설 또는”을 “구미시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거나”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2명”을 각각 “3명”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를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존속기한) 제9조제7호 및 제8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구성된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미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하여 수행</u> 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u>수립·시행</u> ----- -----.
② <u>추진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u>추진계획</u> 은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규모 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u>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u>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 ----- ----- <u>구</u> <u>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u> ----- -----.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u>9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u>11명</u> -----.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③ ----- -----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미시지역에 개설 또는 개
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
표 2명

2. 구미시지역의 전통시장, 슈퍼
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 9. (생략)

④ ~ ⑥ (생략)

제9조(협회의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
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설>

제16조 (생략)

----- 성별-----

---. -----

-----.

1. 구미시에 대규모점포등을 개
설하였거나 -----
-- 3명

2. -----

-- 3명

3.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협회의의 업무) -----

----- 사항에 대해 시
장에게 의견을 제시-----.

1. ~ 9. (현행과 같음)

제16조(규제의 존속기한) 제9조제
7호 및 제8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법 제
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 10. 20.>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22., 2019. 9. 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 9. 27.>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신설 2019. 9. 27.>

[본조신설 2013. 4. 23.]

제4조의3(협회의 운영 등)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23.]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 확대(+2)로 위원회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참석수당	70천원×2명×4회	560천원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담당 안 현 기(054-480-2634)

소 관 부 서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김 차 병
	담 당	박 병 호
	담 당 자	안 현 기 (480-2634)